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401

제안일자 : 2022년 12월 20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2년 10월 11일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과 2022년 10월 17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시민참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등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시민제안’ 및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에서 각각 규정된 기본계획을 ‘시민참여기본계획’으로 통합·조정하고자 하며, 각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를 수정·보완하는 등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과 조문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함.

나. ‘시민제안’ 및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시민참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의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다.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라.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마. 그 밖에 개인·집단에 대한 비방·모욕 등에 불과한 것

6.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처리·결과 등을 공개하고 시민이 24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의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시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참여 활성화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제안 제도의 운영

제11조(시민제안의 제출) ①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민제안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접수 및 검토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우편·팩스로 접수된 시민제안은 시장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등재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검토결과 공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기준, 공개방법, 공개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 및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14조(우수제안의 실시 및 보완) 시장은 우수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우수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제안의 확산) 시장은 우수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그 시민제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참여 관련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참여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은 제1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작성·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5장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참여 사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적용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초 수립은 2024년부터로 한다.

제5조(시민참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주민참여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으로 한다.